2022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무림페이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시대상기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한국거래소 귀중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24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신고하며, 기재사항 중 거짓의 내용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 도 균 (서명)

(붙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목 차]

Ⅰ. 지배구조 일반 ---------- 4

Ⅱ. 주주 ---------- 7

1. 주주의 권리 ---------- 7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5

Ⅲ. 이사회 ---------- 18

1. 이사회 기능 ---------- 18

2. 이사회 구성 ---------- 24

3. 사외이사의 책임 ---------- 32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35

5. 이사회 운영 ---------- 36

6. 이사회 내 위원회 ---------- 40

Ⅳ. 감사기구 ---------- 41

1. 내부감사기구 ---------- 41

2. 외부감사인 ---------- 47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 50

<별첨>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Ⅰ. 지배구조 일반

1. 개 요

◆ **기업명 : 무림페이퍼주식회사**

◆ **작성담당자 : (정) 자금팀 박명황 팀장(02-512-3340, moorim@moorim.co.kr)**

(부) 자금팀 박세진 과장(02-512-3340, moorim@moorim.co.kr)

◆ **작성기준일 : 2022.12.31**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무림에스피(주) 외 5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3.17%
		소액주주 지분율	46.83%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제품*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무림		

요약 재무현황(단위:억원)			
	2022년	*2021년*	*2020년*
연결 매출액	13,991	10,552	9,497
연결 영업이익	963	298	273
연결 계속사업이익	416	30	-404
연결 당기순이익	348	4	-378
연결 자산총액	24,291	22,844	21,950
별도 자산총액	9,904	8,958	8,581

2.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객, 직원, 협력업체 등 회사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발전한다는 기업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투명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 선임 수 이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에 대한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사내이사 보다 많은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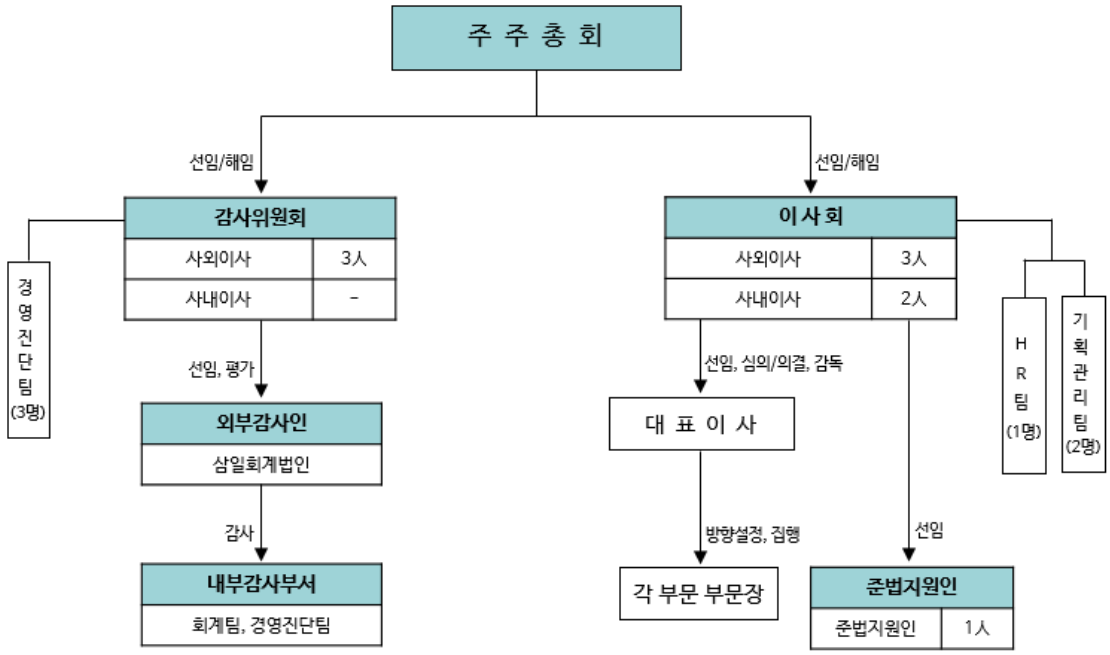
당사는 필요시 담당임원 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제공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5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 선임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및 상법상 사외이사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이전에 선임 예정인 이사에 대한 정보(세부경력,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 추천인과 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밖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직무수행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총 3명으로 임기는 3년이고, 최초선임 후 총 재직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분리선출된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내부감사 및 이사회 업무 감독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3월 제44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재무, 전략, 감사업무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조직도



(3) 지배구조 특징

당사는 이사회의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와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60%)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회사 및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매 분기마다 1회씩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규정한 위원회와는 별도로 계열사간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의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와 중요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인사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지배구조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내부기관	구성 (사외이사수/ 모든이사수)	의장 (위원장)	주요역할
이사회	3/5	이도균 (사내이사)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사위원회	3/3	손승태 (사외이사)	1. 감사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4.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Ⅱ. 주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개최 관련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①-1) <최근 3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

구분		제50기 주주총회	제49기 주주총회	제48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3년2월27일	2022년3월7일	2021년3월9일
소집공고일 주주총회개최일		2023년2월27일 2023년3월29일(수)	2022년3월7일 2022년3월24일(목)	2021년3월10일 2021년3월26일(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29일 전	주총 17일 전	주총 16일 전
개최장소/지역		본사/경상남도 진주시	본사/경상남도 진주시	본사/경상남도 진주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5명중 5명 출석	5명중 5명 출석	5명중 4명 출석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중 3명 출석	3명중 3명 출석	3명중 3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5인(개인주주 5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1)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1) 발언주주 : 4인(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나. 주주총회 정보 제공 관련

당사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함에 있어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고자 주주총회일 4 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1% 초과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전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주총회 1 주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으며, 동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권행사 관련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제50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직접 참석에 의한 방식,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외에 주주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을 위한 주주총회자율분산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총회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총회 활성화 일환으로 운영중인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표 1-②-1) <최근 3년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행사제도 도입 현황>

구분	제50기 주주총회	제49기 주주총회	제48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1)	2023년3월24일(금) 2023년3월30일(목) 2023년3월31일(금)	2022년3월25일(금) 2022년3월30일(수) 2022년3월31일(목)	2021년3월26일(금) 2021년3월30일(화) 2021년3월31일(수)
정기주주총회일	2023년3월29일(수)	2022년3월24일(목)	2021년3월26일(금)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예	예	아니오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예	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1)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주주총회집중(예상)일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②-2)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현황>

정기	제 50 기 주주총회	2023.3.29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반대·기권 주식수(C) (비율,%)
제1호 의안	보통	제50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	41,609,310주	22,832,544주	22,695,442주 (99.4%) 137,102주 (0.6%)
제2-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이종철 선임의 건	가결	41,609,310주	22,832,544주	22,705,204주 (99.4%) 127,340주 (0.6%)
제2-2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모철인 선임의 건	가결	41,609,310주	22,832,544주	22,704,065주 (99.4%) 128,479주 (0.6%)
제3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모철인 선임의 건	가결	24,175,539주	5,398,773주	5,270,294주 (97.6%) 128,479주 (2.4%)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1,609,310주	22,832,544주	22,704,661주 (99.4%) 127,883주 (0.6%)

※출석주식 총수는 22,832,544 주(54.9%)이며, 이중 전자투표를 통한 행사 주식수는 245,585 주임.
1)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4)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정기	제 49 기 주주총회	2022.3.24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반대·기권 주식수(C) (비율,%)
제1호 의안	보통	제49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	41,609,310주	23,605,396주	23,295,562주 (98.7%) 309,834주 (1.3%)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41,609,310주	23,605,396주	23,501,499주 (99.6%) 103,897주 (0.4%)
제3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손승태 선임의 건	가결	41,609,310주	23,605,396주	23,428,820주 (99.3%) 176,576주 (0.7%)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손승태 선임의 건	가결	24,175,539주	6,171,625주	5,998,085주 (97.2%) 173,540주 (2.8%)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1,609,310주	23,605,396주	23,457,518주 (99.4%) 147,878주 (0.6%)

※출석주식 총수는 23,605,396 주(56.7%)이며, 이중 전자투표를 통한 행사 주식수는 233,338 주임.
1)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4)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나. 주주참여 및 의결권 행사 제고 관련

당사는 정관 제 25 조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분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기보고서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 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주제안 접수(서면 또는 전자문서) → ②주주제안의 형식적 조건(행사기한, 행사수단, 지분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③이사회 보고 → ④제안 내용의 적격성, 적법성 등 실질적 조건 확인 → ⑤주주총회 안건 상정

당사는 주주제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주주제안제도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 부서인 자금팀에서 매뉴얼화 하여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향후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등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반영하여 통지합니다.

당사는 최근 3 년간 주주제안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된 공개서한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으며, 이에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 이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결의한 안건은 없습니다.

(표 1-③-1)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제안일자	제안주체	주요내용	처리 및 이행상황	가결여부	찬성율(%)	반대율(%)
-	-	-	-	-	-	-

(표 1-③-2)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의 주요내용 및 처리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	-	-	-	-

나.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 사항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시 제안된 의안에 대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으며, 주요 임원진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 및 계획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은 회사의 성과에 기반한 누적이익잉여금의 안정적 배당 및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를 기본으로 하며, 당기 발생한 시설투자금액 등 자본적 지출과 비현금성비용 등을 가감한 연간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20%~30%를 환원(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주식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정책 포함)하는 것을 기본 배당목표로 정하고 있으나, 배당검토 시 과거 배당수준, 장래의 투자기회에 따른 예상 자본소요, 자금수지 등을 반영한 미래현금흐름수준 뿐만아니라 최근 경영환경, 산업 내 경쟁강도, 주식의 시장가치, 동종 업계의 배당규모, 법률적 변화 등 기업 내/외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투자에 필요한 이익을 사내에 적립하고, 이익의 일정 부분은 주주에게 분배하고 있으며, 최근 3 년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은 1.6%, 최근결산기 배당을 포함하여 과거 6 년간 연속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및 이익 성장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증가 시 장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금배당을 기본정책으로 하되 필요시 현물 또는 주식배당 등을 할 수 있으며, 내부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중간배당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 제 43 조에 이익배당, 제 43 조의 2 에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결산이사회를 통한 배당 예정 금액 등을 확정 시 현금·현물배당 결정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의 최종 승인 후 배당금 수취 대상 주주들에게 증권대행부를 통하여 배당금 지급관련 안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주주안내

당사는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정성 또는 정량상의 주주환원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배당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절차, 과거 배당 이력, 주주안내 방법 등은 정기보고서 및 기타공시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안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현황

당사는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 및 중간배당은 실시한 바 없으며, 향후 당사의 현금 유동성,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⑤-1) <최근 3 년간 배당 내역>

(단위: 주, 원, %)

사업년도	결산월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배당금	총배당금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연결기준	별도기준
2022	12	보통주	-	2,500	50	2,080,465,500	1.9	13.7	-
		종류주	-	-	-	-	-		
2021	12	보통주	-	2,500	25	1,040,232,750	1.0	-	-
		종류주	-	-	-	-	-		
2020	12	보통주	-	2,500	50	2,080,465,500	1.8	-	66.1
		종류주	-	-	-	-	-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 기준이며, 시가배당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명부폐쇄일 2 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 주일 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 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임

나. 주주환원에 관한 주주의 권리

당사는 최근 3년 액면배당률 약 2% 수준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와 영업실적, 유동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을 실시할 경우 특정 주주에게 불리하게 배당을 실시한 경우가 없고,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동일하게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의 지급일은 상법상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주주 편의를 고려하여 주주총회 이후 2주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현황

당사는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80,000,000 주(1 주의 액면금액은 2,500 원)이며,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41,609,310 주입니다.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우선주 등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없고,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41,609,310 주입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발행한 주식수의 전부인 보통주 41,609,310 주입니다.

(표 2-①-1)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비고
보통주	80,000,000	41,609,310	52.01	-

나. 주식의 의결권 공평성

당사는 주주권리 보호 및 행사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모든 주주에게 1 주 1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당사는 수시로 여러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방문미팅, 컨퍼런스콜 등) 및 전화응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moorimpaper.co.kr)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IR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홈페이지 내의 '문의하기'를 통해 제품, 구매, IR관련 사항 등을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빠른시일내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시의 경우에도 가능한 주식이 거래되는 시간내에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 2-①-2) <주요 IR활동 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내용	비고

-해당사항없음-

당사는 SNS 및 영문홈페이지(https://www.moorim.co.kr:13002/eng/main/main.php)를 통하여 회사소개, 실적정보, 공시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들은 홈페이지 내의 '문의하기'를 통해 영문 회사소개자료, IR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 2-①-3) <영문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영문)	주요내용(한글)
-해당사항없음-		

(표 2-①-4)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내용
-해당사항없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은 없습니다.

(표 2-①-5)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내역>

불성실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해당사항없음-					

라. 기업정보 제공의 적시성, 충분성, 공평성

당사는 IR 전담 담당자를 통해 수시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 요청이 있을 시 대응하고 있으며, 개인주주 유선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중 개최한 IR 활동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IR 수단 및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선별적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정공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들을 위한 공시정보 확대를 위해 영문공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현황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효율적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임직원 윤리규범 등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경우 내부거래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내부거래 통제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부의안건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규정 제 12 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중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이사회 안건은 없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2022.1.1~2022.12.31)

(단위: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금액
채무보증	무림캐피탈	종속회사	366
매출거래	무림USA		1,581
매입거래	무림P&P		723
매입거래	무림파워텍		520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관련 주주보호 정책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 발생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이사회 차원에서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합병 등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반대의사를 접수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주요내용들을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의견수렴 및 권리보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현황

공시대상연도의 경우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Ⅲ.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경영사항을 결정합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가-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나. 재무제표의 승인
다. 영업보고서의 승인
라. 정관의 변경
마.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승인
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사.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자.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차. 자본감소
카.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타.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
하.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중장기 경영계획
나. 연간 투자계획
다. 연간 투자계획 외 건당 100 억원 이상의 투자
라. 단일규모 100 억 이상의 프로젝트 계약
마.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상기 투자 및 프로젝트 계약 외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참여, 영업권의 위임 등의 주요 계약
바. 대표이사 선정과 회장 등 임원보직의 부여
사. 중요한 사규(이사회 규정, 임원복무관련 규정, 임원퇴직금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아. 지점, (분)공장, 사무소, 사업장, 현지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자. 분기(또는 년간)의 사업실적 보고 및 연간 사업계획 보고
차.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카. 사업목적의 변경
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①증자(신주발행, 준비금 자본전입 등) 또는 감자 관련사항
②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주식소각
③배당의 결정
④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⑤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⑥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
⑦정관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및 취소여부
⑧주식관련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및 업무지정
⑨우선주식 발행시 이의 우선 배당률 및 존속기간 등의 결정
나.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등 차입에 관한 사항
다. 회사의 재산에 관한 사항
①자기자본 2.5%이상 또는 연간 150 억원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②자기자본 2.5%이상 또는 연간 150 억원 이상의 타인에 대한 대여
③자기자본 2.5%이상 또는 연간 150 억원 이상의 출자 또는 처분
④자산총액 2.5%이상 또는 연간 500 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⑤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라. 차입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기존 차입금의 연장 및 대체에 필요한 은행제출용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 주식관리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는 대표이사 및 관리(재무)담당임원 책임하에 시행하고, 사전(또는 사후)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또는 추인) 받도록 함.

4.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다. 공동대표의 결정
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5. 기타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나.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배인의 선임
다-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 개정 및 폐지
라. 비재무리스크(ESG) 관련 중대한 사항

2)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법 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당사는 회사규모 확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투자 및 보증, 출자, 대여 등 회사 재산에 관한 사항의 기준금액을 2019 년 4 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이사회의 역할 및 권한 추가 사항을 2020 년 8 월 이사회 규정 개정 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차원에서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2022 년 5 월 이사의 자격 및 사외이사 선임 기준과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비재무리스크(ESG)관련 중대한 사항을 부의사항으로 추가하여 재무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지배구조 등 비재무리스크도 이사회 수준에서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의사항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3) 이사회의 위임 사항

당사는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 6 조에 따라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1 조에 근거하여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결정을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평가 및 내부감시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경영감독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미등기임원의 선임, 해임, 보직, 보수 등의 결정 및 보직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사항과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준법지원인의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

<위임사항>
1. 미등기임원의 선임,해임,보직,보수 등의 결정
2. 이사의 보직변경(단, 대표이사 제외)
3. 고문의 선임

나. 이사회 기능의 효과적 수행 관련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이 정비되어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5조에 따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두어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29 조의 2, 제 32 조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9 조의 2 (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각각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업무 일체를 집행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상법, 기타 관련법령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중요업무를 결의한다.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의 지원조직>

부서명	직원수(명)	직위(근속년수)	주요활동내역
기획관리팀	2명	이사(19년), 팀장(18년)	이사회 안건 자료 및 내부통제기구 활동 관련 사항 등 공지
HR팀	1명	팀장(10년)	사외이사 교육과정 수립 및 진행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재선임, 신규선임, 해임/사임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관리, 평가, 육성 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2022 년 5 월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사회규정에 근거 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의 실무 주관 부서는 인사/교육담당 부서로 하며, 상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관리 및 평가, 검증 업무,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 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회사 사업군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필요한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철학을 공유하며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사업 통찰력을 기반으로 기업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경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초격차 역량 확보 의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퇴임하는 경우 임기만료일로부터 최소 2 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최근 3 개년 성과, 경영자로서의 역량, 경험 적합도, 전문성,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체계의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회사는 잠재적 후보군인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무림의 가치체계/업무관리/커뮤니케이션 등의 공통역량, 사업분석/비전과전략개발/Leadership/변화관리/갈등관리/코칭 및 피드백 등의 리더십 역량 과정, 기타 각 후보군별 맞춤교육 등 중장기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임원의 선임 및 평가에 있어서 사내 윤리규정, 가치체계 등에 입각하여 전문성 있는 임원을 선임하고 인사평가에 따른 개별 역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최고경영자의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군 육성 관리, 교육 등 승계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당사는 대표이사의 부재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정관 제 27 조 및 이사회규정 제 5 조에 근거하여 최고경영자의 유고 시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사외이사 중 선임취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및 상시 교육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중 신임임원, HR 전문가 특강, 해외 컨퍼런스, Seri CEO 전문 교육, 서평교육, 외국어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후보군 교육 현황>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대상
신임임원교육	IGM	연초	4日/1回	신임임원
Seri CEO	멀티캠퍼스	매월	20H/月	임원
세계지식포럼	매일경제	연중	3日/1回	임원
HR 전문가 특강	HR팀	연중	2H/1回	임원
도서 서평 교육	자의누리	매월	10H/月	임원
무림Way 교육	HR팀	연말	8H/1回	임원
외국어 교육	능률영어사	매월	4H/1月	임원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1) 리스크 관리

당사는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인 ESG 추진팀을 통해 2022 년 8 월 비재무적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ESG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리스크 관리목표 및 소관부서, 보고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는 회사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며, 각 리스크에 대한 목표설정, 분석, 평가 등은 리스크를 보유하거나 발생시키는 부서의 부서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인 경우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규정을 통해 환경(친환경경영의 실행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근로자 대우,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기타 이해관계자에 관한 사항) 등 비재무적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인자를 명문화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 단위로 대내외적 요인(규제환경, 조직, 업무절차, IT 시스템 등)으로 인한 업무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기 변화관리 사항을 전 부서가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부서에서 발생한 내/외부 환경변화 및 업무프로세스, 조직의 변화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보고 누락 시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

당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모든 부서가 정기적으로 내부회계통제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사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외부감사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 및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및 내부회계 담당조직을 구성, 이를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부서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주요 법률 계약 등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하여 상호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구인 이사회 논의를 거쳐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법률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경영진 및 임직원이 회사경영활동에 있어서 지켜야할 윤리규범 및 준법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사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윤리경영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2020 년 7 월 윤리경영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포한 바 있으며, 윤리규범을 제정하는 등 조직 내 전반적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고충 및 부조리 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한 해피맨제도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반부패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관리

공시대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관리규정을 통해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시담당부서인 자금팀에서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재해나 전염성 질병 등 비상상황시에도 임직원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매뉴얼화 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상시 구성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

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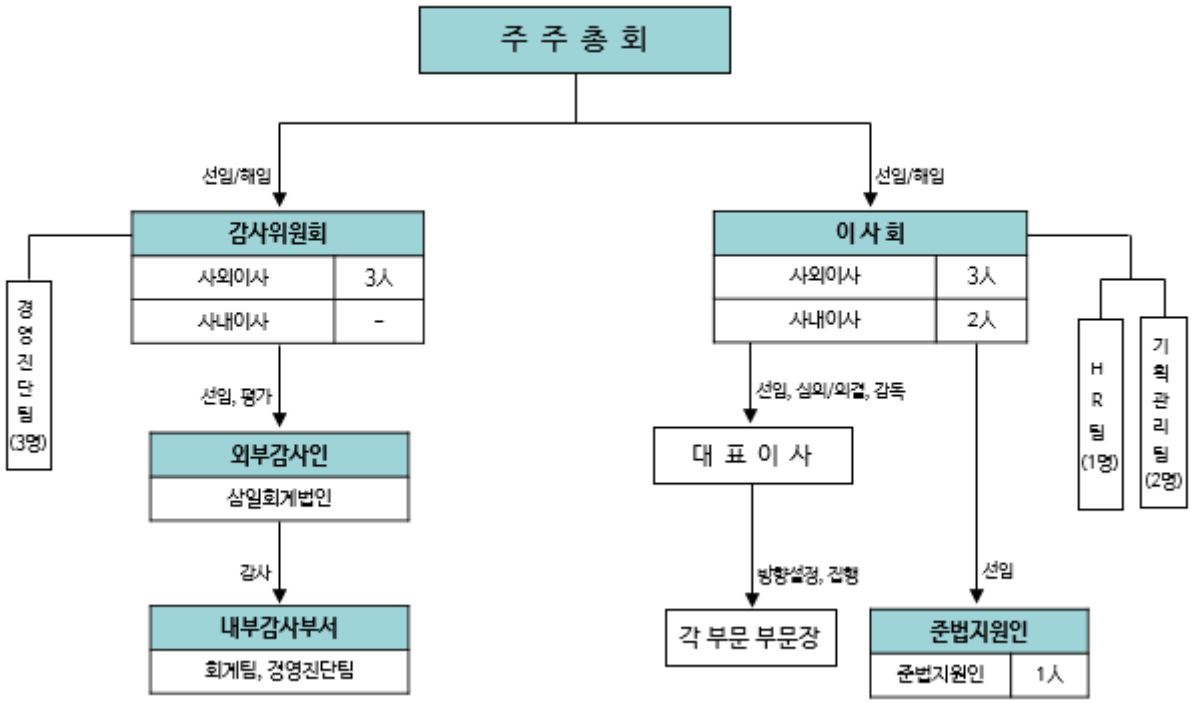
1) 이사회 관련 조직도

당사의 이사회는 2 인의 사내이사, 3 인의 사외이사(사외이사 비율 6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기능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 12 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한이 있으며,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28 조에 의거 이사의 임기를 3 년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3 인 중 1 인이 연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모두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회계, 세무, 법률, 감사업무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 31 조에 의거 회사는 책임경영 실천을 도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도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는 선임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 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2) 이사회 구성 현황

(표 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선임일 (*1)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분야	주요경력
사내이사	이도균	남 (45세)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의장	2015.03.26	2024.03.25	제지, 펄프 경영일반	-무림페이퍼(주) 전략총괄, 관리부본부장, 제지사업부본부장
사내이사	이종철	남 (47세)	이사	2023.03.29	2026.03.28	기획, 전략	-무림페이퍼(주) 기획담당 이사, ESG추진팀장, 기획관리팀장
사외이사	손승태	남 (75세)	감사위원회 위원	2019.03.25	2025.03.23	법률, 감사	-'01~'03 감사원 제1사무차장 -'03~'06 중소기업은행 감사 -'09~'16 법무법인 율촌 고문 -現, 대일산업(주) 사내이사
사외이사	모철인	남 (74세)	감사위원회 위원	2023.03.29	2026.03.28	경영 전략	-~'98 현대그룹 근무 -'99~'19 KEMPOL CORP. 대표이사

사외이사	박시종	남 (69세)	감사위원회 위원	2021.03.26	2024.03.25	법률, 감사	- '77~'10 감사원 감사관 등 - '10~'13 하나UBS자산운용 감사 - '13~'20 법무법인 율촌 고문 - '18~'20 대상(주) 감사

(*1)재선임의 경우 최초 선임일 기재

3)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표 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총 3인)	위원장	사외이사	손승태	남	-	-이사의 직무의 집행 감독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 -그 밖에 기타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위원	사외이사	모철인	남	-		
	위원	사외이사	박시종	남	-		분리선출

나. 이사회의 효과적 운영 및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 의사결정의 다양성 측면에서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운영 등 미 준수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제도의 도입여부를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이사회 중심의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되 향후 회사규모 및 조직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의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의 자격 및 선임기준,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등과 관련하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당사는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 나이, 국적, 인종 등 구성의 다양성에 재한을 두지 않으며, 특히 사외이사는 회사 및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을 특정화 시키기 보다는 이사의 선임 및 활동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제지 및 펄프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영업, 전략, 재무 등 관리, 감독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 선임 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및 상법상 사외이사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이사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여성이사 선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회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인물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 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펄프, 제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2 명과 재무, 법률, 마케팅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3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도균 사내이사 :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약 17년 이상 당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부본부장, 제지사업부본부장을 역임하며 제지, 펄프 분야에 있어서 영업 및 마케팅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관화공장 건설본부 부본부장으로서 현장경험을 두루 경험한 바 있으며, 관리부본부장, 전략기획실장, 전략총괄 등 요직을 경험하며 제지, 펄프 사업분야의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사내이사 : 기획 담당 이사로서 약 19년 이상 당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관리, 전략기획, 홍보 HR 등 관리분야에 대한 업무를 역임하며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기획담당 임원으로서 조직관리, 경영내실 강화, ESG 관련 업무 추진 등 회사의 성장,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손승태 사외이사 : 감사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원, 상장법인,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오랜기간 요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으며,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감사분야의 관점에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철인 사외이사 : 경영/경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간 플라스틱 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경영 현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전략적 관점에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시종 사외이사 : 감사 및 세무,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원, 상장법인,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오랜기간 요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으며,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표 4-②-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2021.01.01~2023.05.31)>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사내이사	이도균	2015.03.26	2024.03.25	2021.03.26	재선임	재직
사외이사	이규봉	2017.03.24	2023.03.22	2021.03.30	중도사임	퇴직
사외이사	박시종	2021.03.26	2024.03.25	2021.03.26	선임	재직
사외이사	손승태	2019.03.25	2025.03.23	2022.03.24	재선임	재직
사내이사	임용수	2020.03.23	2023.03.22	2023.03.29	임기만료	재직
사외이사	이제명	2017.03.24	2023.03.22	2023.03.29	임기만료	퇴직
사내이사	이종철	2023.03.29	2026.03.28	2023.03.29	선임	재직
사외이사	모철인	2023.03.29	2026.03.28	2023.03.29	선임	재직

나.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보유 관련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이사 5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인물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관련

당사는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별도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HR담당 부서에서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자격 및 기본 역량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경력 관리 및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이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 방안과 후보 Pool 선정 후 전문성, 책임감, 다양성 등 이사의 자격과 관련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며,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심의 및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나.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 제공

당사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분, 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정기보고서 외 주주총회소집공고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주주총회를준비함에 있어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충분한 기간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고자 주주총회일 4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 4-③-1) <이사 선임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	이사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3.02.27 (주총 29일전)	2023.03.29	사내	이종철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수상, 포상내역 등), 경력 공백기간 여부, 겸직현황 등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7.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	모철인		
2022.03.07 (주총 17일전)	2022.03.24	사외	손승태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수상, 포상내역 등), 경력 공백기간 여부, 겸직현황 등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7.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1)주주총회소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다.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에 근거하여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 의견 반영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장에서 자유롭게 안건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라.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

당사는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기업규모 및 특성,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독립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현황(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

(표 4-④-1) <임원현황(미등기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이동욱	남	회장	미등기임원	상근	총괄
이도균	남	대표이사 사장	등기임원	상근	총괄
손승태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박시종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모철인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김현창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
류신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총괄
이형수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김국동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구매
임용수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펄프몰드
임영기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개발
이종철	남	이사	등기임원	상근	기획
조성진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영업
김재령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영업
이인강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영업
주판식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당사의 임원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5명(사내이사2명, 사외이사 3명), 미등기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5-2조에 따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시 후보자의 최근 10년 근무경력, 관계 법령(상법 제382조의3, 제542조의8)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체납처분 사실 및 부실기업 재직 여부 등에 관한 확인 서명을 문서화하고 있는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횡령·배임 또는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임원 선임 여부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임원을 선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 관련

당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한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업무별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그 집행은 각 부문의 미등기임원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있어 집행임원제도에 준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기업규모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표 5-①-1)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손승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모철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시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앞서 기재한 '핵심원칙 4'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에서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법상 사외이사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근 3년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 '사외이사자격요건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명문화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임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 및 당사와의 거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사외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격요건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당사와의 거래내역도 없습니다.

나. 사외이사 재직기간

보고서제출일 현재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으며,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①-2) <사외이사 재직기간>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손승태	4년2개월	-	4년2개월	-
모철인	2개월	-	2개월	-
박시종	2년2개월	-	2년2개월	-

다. 사외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들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타기업 겸직 허용에 관한 내부 기준 및 겸직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ESG리스크관리규정에서 사외이사가 다수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외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별도로 규정된 결격사유(2개 이상의 회사에 겸직 제한 등) 해당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무리한 타회사 겸직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②-1)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 기관	겸직 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손승태 (감사위원)	2019.03.25	2025.03.23	-	대일산업(주)	사내이사	2012.6~현재	해당없음
모철인 (감사위원)	2023.03.29	2026.03.28	-	-	-	-	-
박시종 (감사위원)	2021.03.26	2024.03.25	-	-	-	-	-

나. 사외이사의 충분한 시간과 노력 투입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내부회계감사 및 재무제표 감사관련 외부감사인과의 논의 등 감사와 관련한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정책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이사회규정 및 ESG리스크관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사외이사 지원 조직인 기획관리팀, HR팀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며, 이사회 안건 자료 및 내부통제 관련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외이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임원 및 내부지원조직은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사외이사결격요건 등과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영현안 및 이사회 운영 및 역할 등과 관련한 내부교육과 외부전문가로부터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경영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제지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3년 3월 주요 종속회사인 무림P&P㈜ 울산공장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지 및 펄프 제반설비와 제품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커리큘럼을 보완하고, 외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사회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직 정비를 지속 검토할 것입니다.

(표 5-③-1)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사항	비고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별도의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의 충분한 제공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사외이사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방법

당사는 사외이사의 역할 및 권한, 책임과 관련하여 개별실적에 근거한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사회참석률, 의견개진 사항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자발성, 적극성 등과 관련하여 내부 점검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 결과와 재직기간 동안의 회사 기여도 등 업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이사회에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내, 외부평가 및 자기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 관련한 당사 내규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급 등 정액 지급액 외 소정의 활동 비용만 추가 반영하여 매월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수 금액은 정기보고서 제출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임,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나. 사외이사 보수의 적정성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가 법적 책임수준,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보다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및 합리적인 보수 집행을 위해 관련 규정

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관련 규정, 개최내역, 소집통지 여부 등)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0조2항에 근거하여 최소한 매 회계연도에 4회, 각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는 각 이사에게 정기이사회의 경우 회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까지,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회일로부터 최소한 4영업일 전까지 서면 및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상기 절차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에 대한 관련자료는 정기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5일전, 임시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①-1) <이사회 개최 내역>

(2022.01.01~2022.12.31)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21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2022년 사업계획 보고 <의결사항> - 2022년 2월~2022년 4월 만기도래 차입금 및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이전 차수 이사회 안건 세부내용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안전보건계획 보고 및 승인 - 2022년 투자계획 승인	가결	정기	2022.02.10	2022.02.04	5/5

2	결의 사항	- 제49기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현금배당 결의의 건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가결	임시	2022.03.07	2022.03.03	5/5
3	보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	보고	임시	2022.03.08	2022.03.03	5/5
4	결의 사항	- 이사 보수집행에 관한 위임의 건	가결	임시	2022.03.24	2022.03.14	5/5
5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의결사항> - 2022년 5월~2022년 7월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이사회 규정(지배구조 관련) 개정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의 성과평가 연계 방안 승인 - 이전 차수 이사회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가결	정기	2022.05.11	2022.05.06	4/5
6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의결사항> - 2022년 8월~2022년 10월 만기도래 차입금 및 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전 회차 이사회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ESG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승인	가결	정기	2022.08.03	2022.07.27	4/5
7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전 회차 이사회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보고 <의결사항> - 2022년 11월~2023년 1월 만기도래 차입금 및 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지배인 해임 및 신규선임의 건	가결	정기	2022.11.16	2022.11.08	3/5

(표 7-①-2) <이사회 개최 내역>

(2023.01.01~2023.05.31)

회차	안건	가결	정기/	개최	안건	출석/

	구분	내용	여부	임시	일자	통지일자	정원
1	결의 및 보고 사항	<의결사항> - 만기도래 차입금 및 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안전보건계획 보고 및 승인 - 2023년 투자계획 승인 <보고사항> -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2023년 사업계획 보고 - '그린워싱 방지 지침' 제정	가결	정기	2023.02.08	2023.02.01	5/5
2	결의 사항	- 제5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현금배당 결의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전자투표제도 채택	가결	임시	2023.02.27	2023.02.20	5/5
3	보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	보고	임시	2023.03.06	2023.02.24	5/5
4	결의 사항	- 이사 보수집행에 관한 위임의 건	가결	임시	2023.03.29	2023.03.21	5/5
5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ESG 경영활동 보고 <의결사항> - 만기도래 차입금 및 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전회차 이사회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가결	정기	2023.05.16	2023.05.08	5/5

나. 이사회 정기적 개최 및 운영규정 마련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당사는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해당 안건 및 경과요령,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활동내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개별 이사별 주요 발언 내용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보장을 위하여 토의 내용을 녹취하여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책임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②-1)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2022.01.01~2022.12.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비고
	개최일자	2022.02.10	2022.03.07	2022.03.08	2022.03.24	2022.05.11	2022.08.03	2022.11.16	
사내	이도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내	임용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사외	이제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출석	
사외	손승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사외	박시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3.01.01~2023.05.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비고
	개최일자	2023.02.08	2023.02.27	2023.03.06	2023.03.29	
사내	이도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내	임용수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4차 퇴임
사내	이종철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4차 선임
사외	이제명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4차 퇴임
사외	손승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박시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모철인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4차 선임

(표 7-②-2)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2020.01.01~2022.12.31)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2	2021	2020		2022	2021	2020
김석만	사내	2013.12.26~ 2020.03.23	100.0%	-	-	100.0%	100.0%	-	100.0%	100.0%
이도균	사내	2015.03.26~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용수	사내	2020.03.23~ 2023.03.29	95.3%	8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규봉	사외	2017.03.24~ 2021.03.30	100.0%	-	100.0%	100.0%	100.0%	-	100.0%	100.0%
이제명	사외	2017.03.24~ 2023.03.29	90.3%	7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손승태	사외	2019.03.25~현재	90.7%	86.0%	100.0%	86.0%	100.0%	100.0%	100.0%	100.0%
박시종	사외	2021.03.26~현재	87.5%	100.0%	75.0%	-	100.0%	100.0%	100.0%	-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고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감사의 역할 강화 및 내부통제기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제44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향후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사항은 '세부원칙 4-①'에 기재한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 사외이사 구성 여부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강화하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관련 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장은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및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권한이 있으며, 기타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및 참여현황, 기여도 등은 별도로 파악하여 이사 재선임 시 고려하고 있으며, 활동현황 등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별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당사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주요 의결사항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의 출석률

감사위원회의 회의개최 내역, 최근 3개 사업년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은 '세부원칙 9-②'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구성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보고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감사의 역할 강화 및 내부통제기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으며,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분리선출되는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상세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①-1)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손승태	'75~'97, 감사원 부감사관, 1국4과장, 1국2과장 '98~'20, 감사원 제2국장(공기업,금융분야), 제1국장(재정경제분야) '01~'03, 감사원 제1사무차장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박시종	'77~'10, 감사원 감사관 등 '10~'13, 하나UBS자산운용(주) 감사 '13~'20, 법무법인 율촌 고문 '18~'20, 대상(주) 감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모철인	-~'98 현대그룹 근무 -'99~'19 KEMPOL CORP. 대표이사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감사위원들은 이사 선임단계부터 이사회규정에서 규정한 사외이사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회사 및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선임된 감사위원들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상 독립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독립성, 충실성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 구조와 운영, 재무보고과정에 대한 감독, 내부 및 외부감사인과의 효과적인 관계, 법규/규제 및 내부 정책의 준수여부 등 감사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내·외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상 추가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운영

1) 감사위원회 규정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구체적인 역할 및 권한 등을 감사위원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의 구성, 위원장 권한 및 선출방식,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감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 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8)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9)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1)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12)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 검토 및 승인
(13)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검토 및 승인
(14)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5)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6)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17)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8)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9)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20) 기타 감사 관련 정책, 절차 및 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4. 기타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감사위원회 교육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 시 내부감사 지원 부서를 통한 교육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불공정거래 및 ESG 관련사항 등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예정이며,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 등을 정기 감사위원회 회의 또는 필요시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2 년 8 월 3 일 (대면)	삼일회계법인	손승태, 이제명, 박시종	-	-부정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준법통제에 관한 사항 등

3)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정보 접근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무 및 비재무적 주요 변화사항 및 부정위험 요인 등을 내부 지원 부서로부터 보고받고 있어 내부통제를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당사는 감사위원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조직을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시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진단팀	3	이사(31년), 팀장(23년), 과장(14년)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지원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체 관리 -감사위원회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임원급이며,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지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직은 일상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회의 준비, 의사록 작성 등 감사위원회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관련 업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의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부서는 연초 감사위원회로부터 연간 감사계획를 승인을 득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의 보수

감사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보수지급 관련 당사 내규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 금액은 정기보고서 제출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게 적용되는 보수내용이나 보수정책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직무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계·경영·감사분야 전문가로 당사의 이사회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매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정기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하여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 일자를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보고사항으로는 직전연도 감사결과 보고 및 외부감사인 수행업무 평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주총안건자료에 관한 검토사항 등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였으며, 결의사항으로는 연간 감사계획,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외부감사인 선임 등이 있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②-1)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22.01.01~2022.12.31)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2022.02.10	3/3	결의 및 보고사항	<보고사항> -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변화관리 보고 <의결사항> - 정기1차 이사회 절차 및 적법성 등 검토 - 2022년 감사계획 승인 - 감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승인	가결
2	2022.03.07	3/3	보고사항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 - 2021년 사업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	보고
3	2022.03.08	3/3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 내부감사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승인	가결
4	2022.03.24	3/3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5	2022.05.11	2/3	결의 및	<보고사항>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보고	가결

			보고사항	- 2022년 부정위험요소 평가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성과평가 연계 방안 보고 - 2021년 외부감사인 수행업무 평가 보고 <의결사항> - 정기2차 이사회 절차 및 적법성 등 검토	
6	2022.08.03	2/3	결의사항	<의결사항> - 정기3차 이사회 절차 및 적법성 등 검토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가결
7	2022.11.16	2/3	결의사항	<의결사항> - 정기4차 이사회 절차 및 적법성 등 검토	가결

(표 9-②-2)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23.01.01~2023.05.31)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2023.02.08	3/3	결의 및 보고사항	<의결사항> - 정기1차 이사회 절차 및 적법성 등 검토 - 2023년 내부 감사계획 승인 <보고사항> - 4분기 중요한 변화관리 보고 - 4분기 반부패익명신고센터 운영결과 보고	가결
2	2023.02.13	3/3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가결
3	2023.02.27	3/3	보고사항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 - 2022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	보고
4	2023.03.06	3/3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 내부감사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승인	가결
5	2023.05.16	3/3	결의 및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중요한 변화관리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보고 - 2023년 부정위험요소 평가 보고 - 2022년 외부감사인 수행업무 평가 보고 <의결사항> - 정기2차 이사회 절차 및 적법성 등 검토	가결

(표 9-②-3)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내역>

(2022.01.01~2022.12.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개최일자	2022.02.10	2022.03.07	2022.03.08	2022.03.24	2022.05.11
사외	이제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사외	손승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박시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6차	7차	비고
2022.08.03	2022.11.16	
(불참)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2023.01.01~2023.05.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개최일자	2023.02.08	2023.02.13	2023.02.27	2023.03.06	2023.05.16	
사외	이제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5차 퇴임
사외	손승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박시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모철인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5차 선임

(표 9-②-4) <감사위원회 출석률>

(2020.01.01~2022.12.31)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2	2021	2020
사외	이규봉	100.0%	-	100.0%	100.0%
사외	이제명	90.3%	71.0%	100.0%	100.0%
사외	손승태	89.8%	86.0%	100.0%	83.3%
사외	박시종	87.5%	100.0%	75.0%	-

나. 감사위원회의 감사 관련 업무 성실 수행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자가 매사업년도마다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용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정책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승인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한 바 있으며, 감사계획, 감사시간, 제안 보수의 적정성, 부가서비스 등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최고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회계법인으로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의 충실한 수행 여부와,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평가하고 있으며,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은 감사위원회가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여 선임하며, 외부감사 종료 시 감사시간과 투입인력 등 감사 계획에 근거하여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후보평가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명문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내부절차 등을 재점검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

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역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계획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협의 내용은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선정계획, 기타 감사계획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외부감사 실시 후 연간감사 진행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과, 핵심감사사항 및 기타 입증감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은 내부감사지원조직 및 서면, 대면 회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통보 받습니다.

한편 당사는 감사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인 2023년1월31일에 제출하였으며, 연결기준 감사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인 2023년2월16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주기적 의사소통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직전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비고 (세부원칙)
		○	X		○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주주총회 29일전 실시		√	1-①
	② 전자투표 실시*	√		-전자투표제도 도입	√		1-②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주주총회개최일 : 2023.3.29(수)	√		1-②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 공시	√		1-④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최고경영자승계규정 제정 및 이행	√		3-②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내부통제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		√	3-③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대표이사가 의장 겸직		√	4-①
	⑧ 집중투표제 채택		√	-정관상 배제		√	4-③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이사회규정 등에 근거 마련	√		4-④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사외이사 재직기간은 모두 6년 미만	√		5-①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대면교육 실시		√	9-①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감사위원회에 책임자 임면 동의 권한 부여	√		9-①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회계 또는 재무분야 경력 2인이상 보유	√		9-①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대면회의 개최		√	10-②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감사위원회규정 마련	√		9-①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이나,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 기준이며, **항목은 공시대상기간(2022.1.1~2022.12.31) 기준임.